

※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(또는 환급세액) 계산구조

납부세액(=매출세액-매입세액공제액)

- (-) 경감 · 공제세액
- (-) 예정신고 미환급세액
- (-) 예정고지납부세액
- (+) 가산세

지방소비세 차감전 차가감납부세액

×95%*1

지방소비세 차감후 차가감납부세액

*1. 차가감납부세액의 95%를 국세인 부가가치세로, 5%를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로 한다.

I. 경감. 공제세액

<p>(1) 신용카드매출 전표등 발급세액 공제</p>	<p>공제금액=발행금액 × 1.3%(음식점업 ·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.6%) 한도 연간 700만원(납부할 세액을 한도). 법인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.</p>
<p>(2) 전자신고세액 공제</p>	<p>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하는 경우,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.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안 함. 간이과세자는 환급불가.</p>
<p>(3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· 전송 세액공제</p>	<p>발급건수 × 200원(한도는 연간 100만원, 2013년말까지 전 송분)</p>

II. 예정신고 미환급세액

부가가치세의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관(6개월) 단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. 따라서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바로 환급하지 않으며, 그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다.

III. 예정고지납부세액

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 3개월마다 신고하여야 하나,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예정고지하는 일정세액(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/2)을 납부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.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모든 과세기간(6개월)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데, 이 때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의 성격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.

IV. 가산세

1. 신고불성실 가산세

구분	가산세액
무신고가산세	• ①+② ① 부당*무신고: 부당무신고납부세액 × 40% ② 일반무신고: 일반무신고납부세액 × 20%
과소신고 · 초과환급가산세	• ①+② ① 부당과소신고(초과환급): 부당과소신고(초과환급)납부세액 × 40% ② 일반과소신고(초과환급): 일반과소신고(초과환급)납부세액 × 10%

2. 납부 · 환급불성실 가산세

$$\text{미납부·미달납부(초과 환급 받은) 세액} \times \text{일수}^{*1} \times \frac{3}{10,000}$$

*1. 납부기한(환급일)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

3. 미등록 가산세

부과사유	가산세
① 미등록가산세: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	공 급 가 액 $*1 \times 1\%$
② 타인명의등록 가산세: 타인(배우자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자 제외)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	

*1 공급가액: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(타인명의등록 가산세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)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

4.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

부과사유	가산세
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, 부실기재한 경우(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*1)	지연발급·부실기재분 공급가액 × 1%
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그 발급명세를 전송기한이 지난 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*2	공급가액 × 가산세율(미전송 0.3%, 지연전송 0.1%)

*1 부실기재 또는 기재불성실

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지 않음.

*2 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:

- 미전송가산세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(발급일의 다음달 11일)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는 경우, 공급가액의 0.3%
- 지연전송가산세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(발급일의 다음달 11일)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, 공급가액의 0.1%

4.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

부과사유	가산세
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	미발급한 공급 가액×2%
④ 재화·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⑤ 재화·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⑥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 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·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⑦ 재화·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 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⑧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·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·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은 경우	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 액 등×2%

5.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

부과사유	가산세
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실기재한 경우(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)*1	미제출 · 부실기재 분 공급가액 × 1%
③ 지연제출한 경우(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서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)	지연제출분 공급가액 × 0.5%

*1. 다만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(지연제출의 경우를 제외한다)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6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

부과사유	가산세
① 경정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	공 급 가 액 ×1%

7. 현금매출명세서 ·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

부과사유	가산세
<p>① 변호사 등 법에 정한 전문자격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</p> <p>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</p>	<p>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·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수입금액과의 차이 ×1%</p>

8.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

부과사유	가산세
<p>대리납부인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</p>	<p>미달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10%를 한도로 미달 납부액의 3%와 미달납부액 \times 미납일수 $\times 3/10,000$을 합한 금액</p>

9.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

적용 가산세	중복적용 배제
미등록가산세	①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(1%적용분) ②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
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(2% 적용분)	① 미등록가산세 ②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③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
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(1% 적용분)	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· 지연전송가산세
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	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(1% 적용분)
예정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	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
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	납부불성실 · 환급불성실 가산세

10. 가산세의 감면

(1)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,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

다음과 같이 감면하되,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.

구분	감면율
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(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포함)	50%
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	20%
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	10%

(2) 무신고가산세

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·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.

구분	감면율
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·납부한 경우	50%
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·납부한 경우	20%

11. 가산세의 한도

다음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(중소기업은 5천만원)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- ① 미등록가산세(간이과세자의 미등록가산세 포함)
- ②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(1%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)
- ③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
-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
- 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
- ⑥ 현금매출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